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5년도 2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5. 6. 25.)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별 연차일수에 1일을 더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을 얻어 규정을 개정한 후부터 시행한다.
2.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직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한다.
3.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차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차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한도는 10일로 하고 추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노사협의회 운영세칙 제7조(협의회의 구성)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u>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u>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 <u>자로 하되 인사, 급여,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한다.</u>

2025. 6. 25.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서명 이수창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서명 원명희